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통 보

제 목 빅데이터 분석기반 재난예보시스템 구축·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내 용

지방○○○ ○○○는 2014. 5. 9.부터 2015. 1. 6.까지 충청남도 ○○○○ ○○○○센터에서 “빅데이터 분석기반 재난예보시스템 구축<sup>1)</sup>”업무에 대하여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고, 지방○○○ ○○○은 2014. 6. 11.부터 2015. 11. 4.까지 충청남도 ○○○○ ○○○○센터에서 “빅데이터 분석기반 재난예보시스템 구축” 업무에 대하여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고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기반 재난예보시스템 구축”사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입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기능 점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출하고

---

1) 사업기간 : 2015.1.11. ~ 2015.5.11., 사업비 : 254,140,000원

하드웨어에 대하여는 용량관리, 용량계획, 규모산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규모를 산정한 후 도입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사업계획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이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특히, 하드웨어의 경우 서버의 CPU형태나 수, 디스크의 크기나 형태, 메모리 크기, 네트워크의 용량 등 규모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의 형태, 동작 특성, 사용자 수, 서버 시스템에 접속하는 동시 접속자 수, 서버시스템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피크율, 피크타임 하에서의 여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도입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규모가 적정한지를 전문기관이나 자체적으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이후 사용자 수는 전혀 없었으며, CPU 평균 사용량은 1%미만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시스템구축 후에 담당자가 변경되었고,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 연계자료 업로드와 버그 수정 등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 12월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 된 후 연계자료 형식이 다수 변경되어 자료를 업로드하여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최초 구축 업체에게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대책 마련도 없이 방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통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반 재난예보시스템”에 대하여 추진계획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